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77
----------	------

2023년 12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10월 9일, 김기덕 의원

나.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32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3년 12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기덕 의원]

가. 제안이유

-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놀이터 외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리·운영은 물론 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과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 최근 동물보호법 상 규정된 맹견에 대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맹견의 출입금지 조항 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가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공원 등 7개소로 한정되어 있어, 타 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인의 출입 공간에 대한 별도 조항 마련 필요

나. 주요골자

- 1)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13호)
- 2)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이행에 따른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 3) 맹견의 출입금지 등 조항상 다수인의 피해방지 조항 신설함(안 제7조의3)
- 4)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에 있어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4조)
- 5)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정의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이행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보호 업무에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서울시가 정하는 장소를 추가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의 15%에 해당하는 312만 8천 가구¹⁾며, 이중 도시지역에 속한 가구가 233만 1천 가구로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²⁾

또한,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2022)³⁾에 따른 반려동물 보유 가구율 조사결과 2022년은 22.2%로 최근 5년⁴⁾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서울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및 반려동물 수의 증가에 따른 정책수요를 파악하여 동물복지에 위한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은 안 제2조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과 시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시설 및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공간’적인 측면에서 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반려견 놀이터⁵⁾’를 고려할 때 ‘동물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동물복지 차원에서는 별다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유예슬, 손은신), 2023,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공간 조성현황과 이슈

3) 서울특별시,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보고서(2022), 반려동물 보유 현황(p.90)

4) 반려동물 보유가구율: 2018년(20.0%), 2019년(20.1%), 2020년(20.0%), 2021년(19.6%), 2022년(22.2%)

5) "반려견 놀이터"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에 울타리를 둘러 만든 시설을 말한다.

- 또한, ‘복합시설’이라는 공간적 차이를 부여하고 있지만, 해당 시설은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특정시설과 결합하여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사례로 타 시도에서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센터, 동물문화센터, 농업 기술센터 등과 결합하여 반려견놀이터(테마파크, 공원 등)를 조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⁶⁾
- ‘테마파크’라는 용어는 공간적인 면에서 ‘공원(반려견놀이터)’과 크게 다른 의미가 아니며, 시설적인 면에서는 그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으며, 정책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구체화된 추진 상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⁷⁾, 안 제28조의 ‘테마파크’에 대한 정의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 이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아울러, 반려동물 공공공간 유형에 대한 연구⁸⁾에 따르면 소유자는 반려동물과 대규모 공간보다 근린환경에서 산책 등의 야외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테마파크’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반려견놀이터(반려동물공원 등)’의 필요성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혼재되고 있는 공간의 명칭(놀이터, 공원, 테마파크 등)과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세부적으로 안 제6조의2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동물을 등록하도록 유도하여 동물 유기를 예방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동물보호법」(이하 “법”)에서 소유자등⁹⁾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호자가 해야 할 의무사항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동물등록 지원사업 실적 및 등록률 현황: 붙임1 참조)

6) 시설결합형 반려동물 공공공간 사례: 붙임1 참조

7) 관련사업: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연천) 조성 추진계획 - 2024년 중 사전절차 이행 검토 중

8) 건축도시공간연구소(유예슬, 손은신), 2023,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에 따른 공공공간 조성현황과 이슈

9)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안 제7조의3은 맹견과 그 소유자가 함께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 및 고시하는 장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지만, 법 제22조에 따라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맹견으로부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장소’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24조는 동물보호업무 지원에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나 ‘반려동물 전문인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현행 조례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8조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세부기능¹⁰⁾에는 이견이 없지만, 같은 조 제3항에서 이용 시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테마파크’의 목적과 시설의 형태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같은 조 제4항에서 해당 테마파크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시설은 서울시가 최초 설치하는 것으로 운영방식(직영,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이후 결정해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반려동물 공공공간에 대한 시민의 수요는 ‘테마파크’ 유형보다 근린형태의 ‘반려견놀이터’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확대하거나 시설복합화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임.

10) 제28조(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시민 여가 공간 제공
2. 반려동물 문화체험·행사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3. 반려동물 산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 그 밖에 반려동물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한편, 서울시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 사업에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아 종료(지연)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고, 푸른도시여가국 전체 사업 중 시민과 어린이를 위한 공원유지관리 및 행사 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상황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요지 :

- ‘테마파크’라는 용어는 공간적인 면에서 ‘공원(반려견놀이터)’과 크게 다르지 않고,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구체화된 추진 상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테마파크’에 대한 정의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 및 추진 이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등록의무 이행’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은 ‘교육’으로 추진 가능하므로 별도로 규정해야 할 이유는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77
----------	------------

제안년월일 : 2023년 12월 19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테마파크’라는 용어는 공간적인 면에서 ‘공원(반려견놀이터)’과 크게 다르지 않고,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구체화된 추진 상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테마파크’에 대한 정의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 및 추진 이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등록의무 이행’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은 ‘교육’으로 추진 가능하므로 별도로 규정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임.

2. 주요 골자

- “반려동물 테마파크” 정의 삭제(안 제2조제14호)
- “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삭제(안 제6조의2)
- “맹견”의 출입금지 사항에 ‘불특정 다수인 이용장소’ 추가(안 제7조의3제8호)
-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삭제(안 제25조제1항)
-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 삭제(안 제29조)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호를 제14호로 한다.

안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안 제7조의3제8호 중 “맹견”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맹견”으로 한다.

안 제25조제1항 중 “교육·홍보,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을 “교육·홍보”로 한다.

안 제29조를 삭제하고, 안 제30조를 제29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제2조(정의) -----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1. ~ 13. (현행과 같음)
<u><신설></u>	14. “반려동물 테마파크”란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과 시민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14. (현행 제14호와 같음)
14. (생략)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u><삭제></u>
<u><신설></u>	제6조의2(등록의무 이행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리 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와 지원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u><삭제></u>

제7조의3(맹견의 출입 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신설>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와 입양, 동물학대 방지, 동물등록, 반려동물의 교육·홍보 등 동물보호·복지 시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과 동물보호센터, 동물복지지원센터 및 영업자, 영 제5조

제7조의3(맹견의 출입 금지 등) -----

-----.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맹견으로 부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 하는 장소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① ----

----- 교육
· 홍보,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 -----

제7조의3(맹견의 출입 금지 등) -----

-----.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맹견으로 부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 하는 장소

제25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 ① ----

----- 교육
· 홍보 -----

에 따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9조(반려동물 테마
파크의 설치 및 운
영) ① 시장은 반려
동물 테마파크가 설
치·운영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노력
해야 하며,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려동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기
반시설 및 시민 여
가 공간 제공
2. 반려동물 문화체
험·행사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
영 등
3. 반려동물 산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
출을 통한 지역경
제 활성화
4. 그 밖에 반려동물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u>복지를 위하여 시</u> <u>장이 필요하다고</u> <u>인정하는 사항</u> ② <u>시장은 소속 기관</u> <u>이 반려동물 테마파</u> <u>크를 설치하는 경우</u> <u>예산의 범위에서 필</u> <u>요한 경비를 지원할</u> <u>수 있다.</u> ③ <u>시장은 제1항 및</u> <u>제2항에 따라 설치된</u> <u>반려동물 테마파크</u> <u>를 이용하는 시민에</u> <u>게 사용료를 부과할</u> <u>수 있다.</u> ④ <u>시장은 반려동물</u> <u>테마파크를 민간위</u> <u>탁하여 운영할 수 있</u> <u>으며, 민간위탁하는</u> <u>경우 「서울특별시</u> <u>행정사무의 민간위</u> <u>탁에 관한 조례」를</u> <u>따른다.</u>	
<u>제29조</u> (생 략)	<u>제30조</u> (현행 제29조와 같음)	<u>제29조</u> (현행 제29조와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맹견으로부터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장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 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1. ~ 7. (생 략) <u><신 설></u>	제7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 하는 장소로서 맹견으로부터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 · 고시하는 장소</u>